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1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가. 제안이유

-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관련 행정절차에 있어 위탁사무, 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사후관리운영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을 실시하여 증가하는 위탁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변경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탁사무(안 제2장)
 - 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절차 및 방법(안 제3장)
 -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 수탁기관(안 제4장)
 -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등, 협약취소 등 의무 및 명의·책임
- 관리 운영(안 제5장)
 - 비용보조·지원 등, 이용료 징수 등, 교육·지침 및 사무편람, 지도·감독, 사무 감사, 고용승계, 이의신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 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장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안 제2장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
 - 안 제3장에서 위탁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 안 제4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협약취소, 의무 및 명의·책임
 - 안 제5장에서는 관리운영과 관련한 비용보조·지원, 이용료 징수, 교육·지침 및 사무편람, 지도·감독, 사무 감사, 고용승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점차 증가하는 위탁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군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협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위탁사무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경우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경우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절차 및 방법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6조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수탁기관

제9조(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전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문가

2.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1.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사람

2.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전 회의고지·공개·회의록작성·의견진술, 위원의 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⑩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재협약대상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사항은 공증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

8. 이용자·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10. 그 밖에 군수가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협약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2.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4. 제18조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5.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의무 및 명의·책임)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법인·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장 관리 운영

제15조(비용보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보조·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지침 및 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 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13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고용승계) ① 재위탁의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

람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

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 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별표]

인용 조례제명 일부개정 사항(부칙 제4조 관련)

연번	소관부서	조례명	조항	인용 조례제명			
				현행	일부개정		
1	기획감사실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제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	문화관광과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3	주민생활 지원과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10조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4	경제체육과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5	산림과	평창군 산양삼특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6	도시주택과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1조				
7	산림과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8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9	문화관광과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6조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0	경제체육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1조				
11	환경위생과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				
12	산림과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13	도시주택과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14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15	문화관광과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16	문화관광과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운영 에관한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